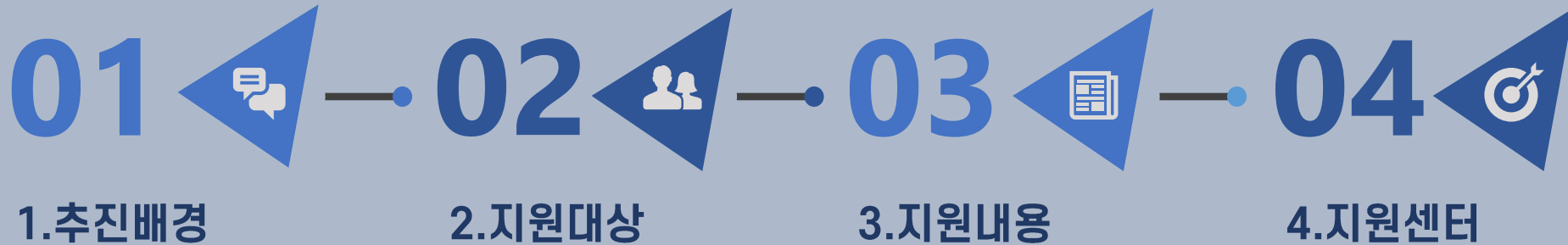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2024



순서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1. 추진배경



수출기업의 원상회복과

미래성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2. 지원대상

기 존

2024년 추가

혁신성장기업

- 스타트업기업
- 혁신중소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 혁신기업 국가대표

수출 중소기업

- 수출비중 50% 이상
- 수출우수 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수출의탑 수상기업

신산업신기술 녹색기술

- 초격차 스타트업기업
- 신산업 분야 육성기업
- 신기술 인증기업
- 녹색기술 인증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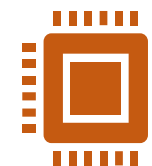
구조조정 중소기업

-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
- 구조혁신 지원대상



뿌리기술 전문기업

- 사출, 프레스 등 제조업 전반의 기반공정기술을 갖춘 기업
- 산자부 뿌리기술 전문 기업 인증 기업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 소재, 부품은 중간재를 의미하며 장비는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
- 산자부 소부장 전문 기업 인증 기업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3. 지원내용

① 자금유동성 지원

-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 납세담보 면제 (1억원 한도)
- 압류·매각 유예 (1년 범위내)
- 경정청구 우선 처리 (2개월→1개월)
-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 지급

② 경영 지원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 신고내용확인 제외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
-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



③ 맞춤형 세무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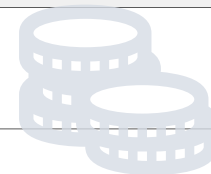
-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뿌리·소부장 전문기업에게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 제공
- 구조조정 중소기업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 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 상담지원 (각 지방청 법인세과)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3-1. 자금유동성 지원

항 목	세부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내 승인
➤ 납세담보 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압류·매각 유예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내 승인
➤ 경정청구 우선 처리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기한 단축 (기존 2개월 → 1개월)
➤ 환급금 조기 지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미리 지급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최대한 앞당겨 지급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3-2. 경영지원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R&D세액공제 사전심사란?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심사)

- 신청인 내국법인, 거주자
- 신청대상 연구·인력개발 관련 비용 (지출예정인 비용, 일부비용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단,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심사결과 서면으로 결과통지,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 가능
- 효력부여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제외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3-2. 경영지원

세무검증부담 축소

신고내용확인이란?

수입금액 신고 누락, 비용 과다 계상, 감면 오류 적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전에 미리 안내 하였음에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

“법인세,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다만,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3-2. 경영지원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뉴스레터 형식으로
분기마다 이메일 발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안내

■ 세액감면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도소매업 등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률〉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 의료업	10%
중기업 (소기업 외)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제조업 등	15%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 의료업	5%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 각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 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관련 비용 등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대상기술(12개 분야, 240개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 중 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
- (공제율) 기업유형별, 연구·인력개발비 종류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

구분	신성장 R&D	일반R&D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30~40%	25%	50%
중견기업	20~30%	8~15%	40%
일반기업		0~2%	25%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3-3. 맞춤형 세무상담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 →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뿌리·소부장 전문기업에 제공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형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무 애로사항 기재

Q. 법인 자금 여유가 없어 이번 부가세 5천만원을 납부 못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세무서 전담직원

신속한 답변 제공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안내

접근경로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미래성장 세정지원 국세상담서비스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3-3. 맞춤형 세무상담

구조조정 세무쟁점 상담지원 →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제공

구조조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무쟁점 유선 문의

Q.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합병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청 전담직원

유선 답변 제공

서면질의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안내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4.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청, 지방청(7개), 세무서(133개) 법인세과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본청)	044-204-3319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907
충부지방국세청	031-888-4837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439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475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465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466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465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서도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